

보도	2025.4.28.(월) 조간	배포	2025.4.25.(금)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	책임자	국 장 김재갑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이동재 (02-3145-726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	책임자	본부장 조성준 (02-2262-6689)
		담당자	부 장 김치국 (02-2262-6631)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	책임자	본부장 최종수 (02-3702-8523)
		담당자	팀 장 김운기 (02-3702-9777)
	보험GA협회 준법채널본부	책임자	상 무 장남훈 (02-2088-3435)
		담당자	본부장 윤태욱 (02-2088-3162)

**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sup>①</sup>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sup>②</sup>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  
 (1차 캠페인, '25.3.4.~3.31.)에 이은 2차 캠페인 실시

## I 캠페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5.3.4.~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 (1차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
    - \*\*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재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규 광고물 삭제·시정
    - ※ (참고) 금감원 보도자료 「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25.2.27.)
- 금번에는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2차 캠페인)하고자 합니다.

## II 1차 캠페인 결과

◆ GA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형 GA의 대부분이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가입하였으며, 1만 2,500여건의 온라인상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

### 1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

- '25.3.4.~3.31. 기간 중 18개 GA(대형 4개사/중형 13개사/소형 1개사)가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 이로써 대형 GA(설계사 수 500인 이상)는 참여대상\*이었던 모든 회사(74개사)가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 \* '24년말 기준 대형 GA 76개사 중 2개사(폐업 예정 1개사, 온라인영업 미영위 1개사) 제외
  - 중형 GA(설계사 수 100인 이상~500인 이하)의 경우에는 전체 회사의 약 66%가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서약서 미제출 중형 GA에 대해서는 서약 참여를 지속 독려 예정

<참고>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제출 GA 현황('25.4.9. 기준)

대형 GA	중형 GA	기 타	합 계
74개사 (캠페인 前 70개사)	62개사 (캠페인 前 49개사)	347개사	483개사

### 2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

- '25.3.4.~3.31. 기간 중 26개 GA(대형 23개사/중형 3개사)가 참여하여 총 1만 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가장 큰 비중(8,520건, 비중 68.1%)을 차지하였으며,
    - 그 외 '미심의 광고'(2,389건, 19.1%), '심의필 누락·오기재'(1,096건, 8.8%) 등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 예정

<참고> GA 자체 위규 광고물 삭제·시정 실적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	미심의 광고	심의필 누락·오기재	잘못된 표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필수기재사항 누락·미흡	기타	합 계
8,520건 (68.1%)	2,389건 (19.1%)	1,096건 (8.8%)	429건 (3.4%)	57건 (0.5%)	12건 (0.1%)	12,503건 (100.0%)

### Ⅲ 2차 캠페인(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실시 안내

◆ 자율점검·시정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자율점검 및 시정기간을 거쳤음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25.4.28.~5.16. 기간 중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채증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되며,
  - \* 보험GA협회 홈페이지([www.igaa.or.kr](http://www.igaa.or.kr))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접속 → '협회사업' →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 '광고모니터링센터')
-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 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5.4.28.~5.16.
- (내 용)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채증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보험GA협회로 제출
  - \* 보험GA협회 홈페이지([www.igaa.or.kr](http://www.igaa.or.kr))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접속 → '협회사업' →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 '광고모니터링센터')
- (제출처) monitoradv@igaa.or.kr
- (문 의) 02-2088-3498

### Ⅳ 향후 계획

-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2분기)이며,
  -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붙임 관련 법령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1) 투자에 따른 위험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
    - 가. 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
    -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2.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금융상품의 명칭
  - 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 다. 수수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갚아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 원리금 상환방법

-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광고의 주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영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제17조(광고의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 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나.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 나. 그 밖의 경우: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3. 예금성 상품
    - 가. 이자율·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 나.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4.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신용카드
      - 1) 연회비
      - 2) 연체율
    - 나.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 1) 연체율
      - 2) 수수료
      -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 다. 그 밖의 대출성 상품
      -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 2) 이자 부과시기
      -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 ② 영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5를 말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
  - 가. 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 1) 금융상품의 편익
    -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 3) 금융상품의 특성
    -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 나.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제18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영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제19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3.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4. 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1) 보장성 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 2) 1)의 이행조건나. 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5.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 영 제2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는 사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이 적법하게 운용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의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및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③ 영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투자성 상품만 해당한다)

**제20조(협회등의 확인)**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광고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것
2. 광고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민원빈도, 광고매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③ 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 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광고심의를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④ 그 밖에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협회등이 정할 수 있다.